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0. 11. 26(목) 10:00

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(복지가족국 소관)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043호

나. 제 출 자 : 김경완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0. 11. 17.

라. 회부일자 : 2020. 11. 17.

2. 제안이유

금천구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등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
라. 장애인친화영향평가(안 제7조)

마. 장애인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바.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○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

○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0. 11. 17. ~ 11. 23.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금천구 장애인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성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-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등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- 장애인친화영향평가(안 제7조)
- 장애인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다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향후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금천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장애인에 관한 다양한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 향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장애인복지법

[시행 2020. 6. 4.] [법률 제16733호, 2019. 12. 3., 일부개정]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8. 6. 20.] [법률 제15272호, 2017. 12. 19., 일부개정]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·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